

[붙임 1]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환산표

|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| 환 산 율 |
|--|----------|
| 1. 학력인정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| 100% |
| 2. 전문대학이상의 채용, 객원, 겸임교원,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의 교육경력 주당 7시간이상 | 50% |
| 주당 7시간미만 | 30% |
| 3. 채용전공분야관련 중.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| 70% |
| 4. 채용전공분야관련 유치원,초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| 50% |
| 5. 대학조교 및 공인된 체육단체(대학코치포함)체육코치 | 2년간 50% |
| 6. 박사학위 소지자 | 5년간 100% |
| 7. 석사학위 소지자 | 2년간 100% |
| 8. 박사과정 수료자 | 2년간 100% |
| 9. 석사과정 수료자 | 1년간 100% |
| 10. 채용전공분야관련 국가기관(시설 및 군경력 포함)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| 80% |
| 11. 채용전공분야관련 국영기업체, 공공단체에서의 전임 근무경력 | 80% |
| 12. 채용전공분야관련 교육부 고시에 적합한 민간산업체 근무경력 | 80% |
| 13.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| 100% |
| 14. 사관학교에서 부교수이상의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 | 100% |
| 15.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| 100% |
| 16.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| 100% |
| 17. 판사, 검사로 근무한 경력, 변호사.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사·변리사·건축사의 개업기간 | 80% |
| 18. 항공법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| 80% |
| 19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 | 80% |
| 20.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, 레지던트,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| 80% |
| 21. 국가, 공공단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| 80% |
| 22. 의과대학,치과대학,한의과대학,수의과대학 졸업자의 의원 개업기간 | 80% |
| 23. 예체능 공인 상설단체 주요간부 근무경력 | 70% |
| 24.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| 80% |

*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은 대학·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.

* 채용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또는 채용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.

*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을 인정한다.